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9월 19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19. 9.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장종연)

가. 제안이유

- 구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 및 중복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참여자에게 참가 상품권 등 지급 시 구체적인 기준 명시 (안 제17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 상위법 및 타 조례에 명시된 중복사항 정비(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그밖에 일상화되어 불필요한 용어 정리(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 및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7조에서 별표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행사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는 2017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어, 운영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여 왔으나,
 - 홈페이지 홍보행사시 구정참여와 구정홍보 등의 효과가 미흡한 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을 통해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 일부용어 및 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법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2 호
----------	---------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구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 및 중복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참여자에게 참가 상품권 등 지급 시 구체적인 기준 명시
(안 제17조)
- 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14조, 제15조)
- 다. 상위법 및 타 조례에 명시된 중복사항 정비(안 제9조~제13조)
- 라. 그 밖에 일상화되어 불필요한 용어정리(안 제2조제9호~제11호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반영 예정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원안동의(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3) 성별영향평가의견: 원안동의
 - 4) 인권영향평가의견: 원안동의(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8.14.~9.3,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 “대화방”을 “소통창구”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대화방 운영”을 “소통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의 대화방을”을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화방은”을 “소통창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는 자의”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민이 필요한”을 “주민에게 필요한”으로 하고, “인터넷 투표·설문”을 “주민이 인터넷 투표·설문”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

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또는 구정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구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구 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별표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홈페이지 이용 행사 참여자 상품권 등 지급 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제공대상자 결정방식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비 고
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참여자 중 추첨, 심사 등	5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비고] 1. 1인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심사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금액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생략) 9. “아이디”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기호를 말한다. 10.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11. “모바일시스템”이란 휴대폰 또는 휴대정보단말기(PDA)등 이동성을 가진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8.(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생략)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 3.(생략)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토론방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 6.(생략)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 -----. 1. ~ 3.(현행과 같음) 4. ----- <u>소통창구</u> ----- ----- ----- 5. ~ 6.(현행과 같음)

③ ~ ④(생략)

제9조(전자민원정보 게시) 구청장은 전자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는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1. 민원신청발급 등 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제11조(전자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 ④(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전자민원창구의 신청대상 민원종류, 민원별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처리기간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④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시할 자(이하 "제3자"라 한다)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수신 받아 출력한 민원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민원인이 열람한 내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동의 받지 아니한 자에 의한 열람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 민원처리에 있어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인

증을 받아야 하며, 증명민원서류 전송 및 민원처리결과 통지에 있어 전자관인의 적용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민원처리의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상담)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삭 제>

<삭 제>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제14조(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소통창구)

① -----

하기 위해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

② ----- 소통창구는 -----

-----.

③ -----
----- 해당하는 자의 -----
-----.

제15조(참여마당 운영)

①(생략)

②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설문 및 정책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생략)

제17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참여마당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
----- 주민에게 필요한 -----
-----, 주민이 인터넷 투표·설문 -----

-----.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17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또는 구정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구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구 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신 설>

제22조(개인정보보호)

- ① ~ ②(생략)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생략)

<신 설>

상품권 등을 별표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
 ④(현행과 같음)

[별표]

홈페이지 이용 행사 참여자 상품권 등 지급 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제공 대상자 결정방식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비 고
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참여자 중 추첨삼등	5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비고] 1. 1인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심사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금액을 말한다.